



2025년 2월 7일부터 “프로포폴” 자가 처방 금지



의사, 치과의사는 **프로포폴**을
자신에게 처방, 투약할 수 없습니다

위반 시 **5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5천만원 이하의 벌금**

*관련 법률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제61조제1항제11호

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상담번호

1670 - 6721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


사단법인
대한병원협회


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